

2020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	1743
------------	------

2020년 9월 15일  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## I 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: 2020. 8. 12.

2. 제 안 자 : 서울특별시장

3. 회부일자 : 2020. 8. 21.

4. 상정일자 : 제29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폐회중

○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(2020. 9. 10.)

- 안건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원안가결

## II. 제안설명의 요지 (기획조정실장 조인동)

### 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라 당초 의결했던 기금 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% 이상 초과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의안번호 제1743호 『2020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』은 2019년 결산결과 예치금 회수 수입 증가와 코로나19로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촌 지원, 타 시도의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원 등 사업비가 증액되었음
- 이에 따라 당초계획 63억 3천 1백만 원에서 6억 2천 7백만 원이 증가한 69억 5천 8백만 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

### **III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엄지운)**

#### **1. 제안경위**

- 의안번호 제1743호, **2020년도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20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#### **2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**

##### **(1). 제안이유**

- 가.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으로 2020년 대외협력기금(국내 계정)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'재무활동' 금액이 당초보다 20% 초과 변경되었음.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(국내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.

##### **(2). 주요내용**

- 가. 전년도 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상 「예치금 회수」 금액이 당초 30억 7,300 만원에서 37억원으로 6억 2,700만원 증가하였음.

나.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「재무활동」 금액이 당초 31억 3,600만원에서 37 억 6,300만원으로 6억 2,700만원 증가하여 20% 초과 변경되었고,

다. 이후 코로나 19로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원을 위한 「농촌일손교류 프로젝트」 신규 추진,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「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」 사업비 증액 등으로 조정하여 최종 「재무활동」 금액은 32억 400만원임.

- 농촌일손교류 프로젝트 1억 100만원 신규편성
-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사업 5억원 증액  
(10억원 → 15억원)
- 타 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 4,200만원 감액  
(3억원 → 2억 5,800만원)

라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**<수입계획>**

구분	당초계획 (A)	1차~3차 (B)	4차변경 (C)	5차변경 (D)	6차변경 (E)	증 감 (E-A)
수입합계	6,331	6,331	6,958	6,958	6,958	627
일반회계 전 입 금	3,200	3,200	3,200	3,200	3,200	-
이자수입	58	58	58	58	58	-
예 치 금 수	3,073	3,073	3,700	3,700	3,700	627

**<지출계획>**

구분	당초계획 (A)	1차~3차 (B)	4차변경 (C)	5차변경 (D)	6차변경 (E)	증 감 (E-A)
지출합계	6,331	6,331	6,958	6,958	6,958	627
비융자성 사 업 비	3,192	3,192	3,192	3,251	3,751	559
기본경비	3	3	3	3	3	-
재무활동	3,136	3,136	3,763	3,704	3,204	68

※ 1차~3차 변경 : 예산과목만 변경(자치단체간부담금→민간경상보조금)하여 예산액 변경 사항 없음

※ 5차 변경 : 「농촌 일손 교류 프로젝트」 사업 5,900만원 신규 편성

※ 6차 변경 :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원 관련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사업비 5억원 증액, 「타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」 △4,200만원, 「농촌 일손교류 프로젝트」 4,200만원

### 3. 검토의견
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'19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잉여금을 수입계획 중 예치금회수(6억 2,700만원)와 지출계획중 예치금(6억 2,700만원)에 기반영하고, 예치금중 일부를 감액하여 정책사업인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 중 세부사업의 지출계획을 증·감 조정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- 관련 법령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
  - 직전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지출계획중 예치금이 당초보다 20%, 6억 2,700만원 증가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됨
-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'전년도 결산에 따라 기금 예치금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,
  - 동 계정은 지난 3월, 기금운용부서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여유재원(6억 2,700만원)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이미 반영한 것으로 확인됨
  - 따라서 결산결과에 따른 여유재원은 관련 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입 및 지출계획에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결산결과를 반영하고자 지출계획중 예치금을 증가시키는 것은 의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
- 그럼에도 불구하고, 기금운용부서로서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"정책사업"에는 재무활동, 행정운영경비까지 모두 포함됨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있어 일부 개선이 필요한 점이 지난 '19회계연도 결산심사시 지적된 바 있어

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의회의 의결취지를 존중하고자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사료됨

- 뿐만 아니라 내년도부터 적용되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결산결과 발생된 여유재원이라도 재무활동의 20% 이상에 해당되면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개정되어 기금운용부서가 관련 기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사료됨
- 아울러 비융자성 사업의 경우, 결산결과 발생된 여유재원(6억 2,700만원)을 지출계획에 계상한 이후 다른 정책사업(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)중 **농촌일손교류 프로젝트**를 신규 지출계획하고, **타지방자치단체 재해·재난구호지원**은 증액하여 지출계획 한 바,
- 정책사업인 **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**중 **농촌일손교류 프로젝트**는 지난 5월, 심의위원회를 통해 재무활동(예치금)중 △5,900만원을 감액하고, 감액된 예치금만큼 **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**의 당초 지출계획 보다 5,900만원을 증액하여 신규 지출계획 한 것으로 확인됨
  - 또한, 심의위원회를 통해 재무활동(예치금)중 △5억원을 감액하여 **타지방자치단체 재해·재난구호지원**에 5억원을 증액한 것으로써 감액된 예치금만큼 정책사업인 **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**의 당초 지출계획은 5억원이 증액되어 지출계획 한 것으로 확인됨
  - 따라서 **농촌일손교류 프로젝트**에 5,900만원이 순증되고, **지방자치단체 재해·재난구호지원**에 5억원이 증액됨으로써 정책사업인 **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**은 당초지출계획(31억 9,200만원)보다 17.5%, 5억 5,900만원 증가된 37억 5,100만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
- 정책사업인 **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**중 증액된 지출계획의 내용은 대외협력기금 국내계정의 고유목적 사업인 타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 증진에 필 요한 사업경비에 해당하여 조례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용도에 적합한 지출

로 사료됨

- 다만, 정책사업(**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**) 지출금액 변동비율이 당초보다 17.5% 증가되는 것으로 관련 기준이 정하는 의회의 의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됨
- 관련 법령은 “정책사업 지출금액”을 변경하려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, 동 계정의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은 ①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, ②재무활동, ③행정운영경비로 확인되나 제출된 안건에 기재된 지출계획은 “비용자성사업, 기본경비, 재무활동”으로 임의 기재하고 있어 지출계획의 정책사업을 편의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#### 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#### V. 토론요지 : 「생략」

#### 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2020. 9. 10.)

# 2020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174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으로 2020년 대외 협력기금(국내계정)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「재무활동」 금액이 당초보다 20% 초과 변경되었음.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(국내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전년도 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상 「예치금 회수」 금액이 당초 3,073백만원에서 3,700백만원으로 627백만원 증가하였음.
- 나.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「재무활동」 금액이 당초 3,136백만원에서 3,763백만원으로 627백만원 증가하여 20% 초과 변경되었고,
- 다. 이후 코로나 19로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원을 위한 「농촌일손 교류 프로젝트」 신규 추진,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「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」 사업비 증액 등으로 조정하여 최종 「재무활동」 금액은 3,204백만원임.
- 농촌일손교류 프로젝트 101백만원 신규편성
  -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사업 500백만원 증액(1,000백만원 → 1,500백만원)
  - 타 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 42백만원 감액(300백만원 → 258백만원)

## 라. 수입 · 지출계획 변경내용

### 〈수입계획〉

구 분	당초계획 (A)	1차~3차 (B)	4차변경 (C)	5차변경 (D)	6차변경 (E)	증 감 (E-A)
수입 합계	6,331	6,331	6,958	6,958	6,958	627
일반회계 전 입 금	3,200	3,200	3,200	3,200	3,200	-
이자 수입	58	58	58	58	58	-
예 치 금 수	3,073	3,073	3,700	3,700	3,700	627

### 〈지출계획〉

구 분	당초계획 (A)	1차~3차 (B)	4차변경 (C)	5차변경 (D)	6차변경 (E)	증 감 (E-A)
지출 합계	6,331	6,331	6,958	6,958	6,958	627
비용자성 사 업 비	3,192	3,192	3,192	3,251	3,751	559
기본경비	3	3	3	3	3	-
재무활동	3,136	3,136	3,763	3,704	3,204	68

※ 1차~3차 변경 : 예산과목만 변경(자치단체간부담금→민간경상보조금)하여 예산액 변경 사항 없음

※ 5차 변경 : '농촌 일손 교류 프로젝트' 시범사업 59백만원 신규 편성

※ 6차 변경(예정) :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원 관련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사업비 500백만원 증액, '타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' △42백만원, '농촌 일손교류 프로젝트」 +42백만원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#### ○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 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### 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### 라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협력상생담당관 대외협력팀 김현태(☎ 2133-6655)